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2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601,100,000	18,033,000
일반회계	586,200,000	17,586,000
일반회계	586,200,000	17,586,000
특별회계	14,900,000	447,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	530,000	15,9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83,000	29,49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50,000	19,5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	6,630,000	198,900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35,000	1,050
주차장특별회계	6,072,000	182,16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789,100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4,830,697천원, 목적예비비 6,958,403천원)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